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심사 보고

의 안 번 호	1923
------------	------

2020년 12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이광호 의원 등 17명

나. 제안일자 : 2020년 10월 15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라. 상정일자

- 제298회 정례회 제6차 교통위원회(2020년 12월 17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광호 의원)

가. 주 문

- 대형택시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1인승 이상의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요금제”를 따르는 반면, 대형승용택시는 모범택시와 동일한 기준의 요금을 따르고 있어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고급화 및 다양성 개선이 어려운 등 차별로 볼 수 있어,
- 6~10인승 대형승용택시의 경우에도 대형승합택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운임을 신고하는 “자율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함

나. 제안이유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서는 대형택시의 기준을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6~10인), 승합자동차(13인승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같은 대형택시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1인승 이상의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요금제”를 따르는 반면, 대형승용택시는 모범택시와 동일한 기준의 요금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대형승용택시의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고급화 및 다양성 개선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대형승용택시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음

- 또한, 실제 대형승합택시로 이용되고 있는 스타렉스와 카니발의 경우 대형승용택시에 비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대형승용택시에 비해 운행시 마지막 열을 접어두고 운행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 승객수에 차이가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승객 수에 따른 요금제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으로 판단됨
- 따라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6~10인승 대형승용택시의 경우에도 대형승합택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운임을 신고하는 “자율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나. 기타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원안 동의

- 대형승용택시를 활용한 택시서비스 고급화와 다양화를 통해 시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함
- 다만, 대형승용택시에 자율요금제를 전면 허용시 모범택시요금으로 운행되고 있는 대형승용택시의 운송질서 혼란이 우려되므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한정하여 자율신고요금제 적용이 필요함

라. 이 송 쳐

○ 국 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정 부 :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대형택시 임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형승합택시와 대형승용 택시 요금제가 달라 이용시민 불편이 있어, 대형승용택시에도 사업 경영자가 시장에게 특정 운임·요금을 신고하는 일명 “자율요금제”를 적용하여 이용 혼란을 막고 택시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내용

제7조(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¹⁾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운행형태가 광역급 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
2.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승합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승합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4. 제4조제2항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검토의견

- 대형택시의 종류와 관련해서 현행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²⁾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6~10인승)와 승합자동차(13인승 이하)를 대형택시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³⁾에 따르면 공항버스와 같이 한정면허를 받거나 택시운송사업자 중 대형승합자동차 또는 고급택시를 경영하는 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가 아닌 특정 요금을 신고하여 정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6~10인승 대형승용택시는 시장이 정한 기준과 요율에 따라 요금을 정하는 일명 “기준요금제”를 따르고 13인승 이하인 대형승합택시는 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같은 대형택시임에도 서로 다른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대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다만, 나목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 나.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
2.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 대형택시 비교

구분	대형승용	대형승합
크기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6~10인승)	2000cc 이상인 승합자동차 승차정원(13인승 이하)
요금제	기준요금제 (모범택시와 동일) : 시장이 정하는 요율에 따른 요금제 3km까지 6,500원, 200원 당 151m	자율요금제 : 특정요금 신고제
운행대수	331대	216대
차종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등	11인승 스타렉스, 솔라티 등
차량모습 ⁴⁾		

- 서울시에는 현재 대형승용택시 331대, 대형승합택시 216대가 운행 중에 있고, 외형이 유사한 대형택시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요금 제로 운영됨에 따라 대형택시 이용시민들은 요금체계 혼란을 가질 수 있음
- 한편,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요금제를 통해 이용시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반면 기준요금을 따르는 대형승용택시는 서비스 향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출처 : <https://blog.naver.com/airpic-korea/221560779219>

- 따라서, 대형승용택시에도 기준요금제가 아닌 자율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최근 기술발달에 따른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대형승용택시의 고급화 및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이용시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건의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기준요금제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선호하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이용시민이 있고 자율요금제 도입이 실질적인 요금현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모든 대형승용택시에 대한 요금제 변경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동 건의안이 단순히 요금제 변경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변화된 서비스 제공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계자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대형택시의 기준을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6~10인)와 승합자동차(13인승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에는 카니발과 스타렉스가 주종을 이루는 대형승용택시 331대와 대형승합택시가 246대 각각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같은 대형택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승합택시는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의한 요금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운임을 신고하는 일명 “자율요금제”를 따르는 반면, 대형승용택시는 모범택시와 동일한 기준요금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승객 입장에서는 대형승용택시와 대형승합택시 간 외형구분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형태의 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요금 차이에 대한 민원을 발생시킬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요금제를 통해 승객에 대한 이용 서비스의 고급화 및 다양화를 실현하기 원활한데 비해 대형승용택시의 경우 기준과 요율이 정해져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결국 대형 택시간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실제 대형승합택시로 이용되고 있는 스타렉스와 카니발의 경우 대형 승용택시에 비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대형승용택시에 비해 앞옆 좌석

공간도 좁고 실제 운행시 마지막 열을 접어두고 운행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 승객수에 차이가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승객 수에 따른 요금제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6~10인승 대형 승용택시의 경우에도 대형승합택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운임을 신고하는 “자율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0.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